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재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,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9급 1명)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,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(중전의 제12호) 중 “제13항제10호 및 제16항제11호”를 “제10항제10호 및 제13항제1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(중전의 제13호) 중 “제13항제11호 및 제16항제12호”를 “제10항제11호 및 제13항제1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제12호 중 “국내외”를 “국외”로 한다.

9.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·조정

10. 독립·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3명(행정사무관 2명)”을 “4명(행정사무관 3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336”을 “337”로, 일반직 계 “332”를 “333”으로, 행정사무관 “37”을 “38”로 한다.

별표 18 중 행정서기보·사회복지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162”를 “163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9”를 “8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5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 1명)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보훈문화정책실) ① ~ ⑤ (생 략)	제8조(보훈문화정책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</u> · <u>조정</u>	<삭 제>
6. ~ 11. (생 략)	5. ~ 10. (현행 제6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)
12.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 · 감독(<u>제13항제10호 및 제16항</u> <u>제11호의</u> 사항은 제외한다) 및 지원	11. ----- -- <u>제10항제10호 및 제13항제1</u> <u>1호</u> ---
13.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 관의 지도 · 감독(<u>제13항제11</u> <u>호 및 제16항제12호의</u> 사항은 제외한다)	12. ----- -- <u>제10항제11호 및 제13항제1</u> <u>2호</u> -----
14. (생 략)	13. (현행 제14호와 같음)
⑦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<u>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</u> · <u>조정</u>
<신 설>	10. <u>독립 · 호국 및 민주화 관련</u>

⑧・⑨ (생략)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1. (생략) 12. 독립・호국 및 민주화 관련 <u>국내외</u>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⑪ ~ ⑭ (생략) 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「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, 별표 5의 정원 중 <u>3명(행정사무관 2명, 행정주사보 1명)</u>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②・③ (생략)	<u>국내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</u> ⑧・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----- <u>국외</u> ----- -- ⑪ ~ ⑭ (현행과 같음) 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명(행정사무관 3명, 행정주사보 1명)</u> ----- -----. ②・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]

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36</u>	<u>33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32</u>	<u>333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37</u>	<u>38</u>	+1
·	·	·	
·	·	·	

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8]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2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· 사회복지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162</u>	<u>163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9</u>	<u>8</u>	-1
·	·	·	